

中共特許法의 起草와 公布

I. 머리말

中共特許法은 1984年 3月 12日 開催된 第6期 全人大會 常務委員會 第4次 會議에서 採擇되어 1985年 4月 1일부터 施行되었다.

中共特許法誕生은 社會主義 立法歷史上 重要한 事件이다. 特許法公布는 特許權 및 中共과 世界各國과의 技術·經濟的 交流에 關해서 法的 保護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 最初의 特許法은 中共內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다같이 荷美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中共特許法의 起草는 1979年 3月 19日에 始作되었다. 당시 國家科學 技術委員會 수석 副主任 Wu Heng씨가 法學教授와 貿易·技術專門家를 包含하여 中共特許法起草專門家 作業그룹을 建立했다.

中共當該官廳은 國內 및 國外에서 幫助위한 調查와 研究를 했다. 國내에서는 各省 및 地方當局에 대해 6回에 걸쳐 提案·意見을 들었고, 同時に 作業그룹은 30個國以上의 特許法, 85個國의 特許法要約을 研究하고 10個國以上을 訪問하여 多數의 外國 特許廳, 特許機關 및 國際工業所有權機關으로부터 有益한 助言과 援助를 받았다. 法律公布前에 草案에 대해 반복해서 修正補完했으며 重要한 項은 그 回數가 20回以上에 달했다. 中共의 指導者들은 中共特許法制定에 關해서 多大한 配慮와 援助을 해 주었다. 立法 마지막 段階에서는 全人大會 常務委員會가 2回에 걸쳐 審議·討論하고 重要한 事項에 修正을 가하여 1984年 3月 12日에 採擇

했다. 中共特許法은 8章 69條로 되어 있다. 즉 第1章 : 總則, 第2章 : 特許權賦與의 條件, 第3章 : 特許出願, 第4章 : 特許出願審查와 認可, 第5章 : 特許權存續期間과 滿了 및 消滅, 第6章 : 特許實施와 強制許諾, 第7章 : 特許權保護, 第8章 : 附則등이다.

II. 中共特許法의 目的

中共特許法의 目的是 發明 및 考案의 特許權을 保護하고 發明 및 考案을 鼓勵하여 發明 및 考案의 普及, 應用에 寄與토록 하여 科學技術의 發展을 促進함으로써 社會主義 現代化建設의 要請에 副應하는데 있다.

[第1條]. 第2條에서 “發明 및 考案”이라는 表現에는 發明·考案 및 意匠이 포함된다.

第1條는 中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창성을 얻을 수 있는 重賞적宣言的條文인 것 같다. 그러나 實際로는 이 問題에 관해서 異見이 있다.

어떤 사람은 中共에서 도래체 特許法이 必要한가, 特許法이 하는 것이 과연 發明 및 考案의 奨勵, 發明 및 考案의 普及, 應用에 寄與하고 科學技術의 發展을 促進함으로써 社會主義 現代化의 要請에 副應하기 위해 適合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들의 表現은 다음 2가지 點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意見은 豐은 企業·會社·科學技術研究所 및 其他 組織은 國家 및 全國民에 속하고, 專用特許權은 中共의 社會主義性에 적합하지 않거나 雜合되지 않는다는 意見이다. 둘째는 中共은 開發途上國이며 既開發國과의 사이에 技術的 格差가 存在한다. 게다가 特許法은 주로 外國人의 特許權을 保護하는 것이 되어 外國特許가 中共의 技術市場을 獨占하여 支配하게 된다고 하는 意見이다. 慎重한 討議와 中共의 事情 및 國際實務의 칠저한 연구결과 豐은 사람들이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첫째 意見은 中共社會主義制度에서도 商品生產 및 交換은 存在하며 亦 新規한 技術의 發明 및 考案도 商品性을 갖고 있다. 技術의 發明 및 考案의 生產 및 交換은 法的 保護를 받아야 한다. 中共技術의 改革에 適合하기 위해 中共은 “共有의 남비로 식사를 한다”는 관념을 变경해야 한다. 特許制度와 特許法은 社會主義의 作業 및 全國民所有制의 他組織의 進取性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되고 必要한 것이다.

둘째 意見은 外國에 대한 開放政策에 따라 中共은 外國技術의 導入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한다. 特許法에 의한 保護는 中共과 外國間의 技術的 經濟的 交流와 協力を 容易하게 하고 促進한다. 그래서 1982年 가

을에 趙紫陽 首相은 中共의 特許法을 “制定하고 施行한다”고 發表했다.

F.K. Beier教授가 쓰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國家에서는, 예를 들어 英國·美國·프랑스·西獨·스위스 및 네덜란드가 그랬듯이 特許 保護는 그 利點 및 결점에 대해서 상당히 集中的인 討議와 保護에 대한 贊成論 및 反對論의 慎重한 調整後에 비로소 導入되었다. 特許에 관한 法令은 항상 難產이었다.”

中共도 또한 特許法의 草案作成의 段階에서 이와 類似한 歷史的 過程을 經驗했다.

III. 特許만 인가?

發明者證도 포함하는가?

草案作成의 始作에 있어서 注意 깊게 考慮해야만 하는 한가지 問題는 中共이 特許만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發明者證도 採擇해야만 하는가의 問題였다. 이 問題에 答하기 위해서는 中共의 社會的 構造의 現狀부터 出發함과 同時에 國際的인 實狀 및 經驗에 유의해야만 한다.

前述한 대로 中共經濟 改革을 위해서는 全國民所有組織의 進取性을 助長할 必要가 있다. 많은 發明 및 創作은 이를 組織의 技術勞動職員들로 부터 생긴다. 만약 이를 組織이 그 劳動職員들의 發明 및 創作活動에 아무런 흥미도 보이지 않고 또 혜택도 주지 않으면 發明 및 創作의 推進에 있어서 技術勞動職員에 대해서는 不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技術的活動에 대한 장해가 될 것이다. 發明者證은 他國의 입장에서는 適合하는지는 모르나 中共經濟 改革에는 적합하지 않다. 發明者는 보답을 받으나 企業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共有의 남비로 식사한다”고 하는 習慣을 범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外國의 經驗도 慎重하게 研究했다. 最近 社會主義國家에는 發明者證制度를 포기하거나 根本的으로 修正한 國家가 늘고 있다.

헝가리는 1959年 6月 23日에 發明者證을 폐지하고, 유고슬라비아는 1960年 特許法中の 發明者證制度를 废止했음을 確認했다. 루마니아는 特許法만 있고 發明者證制度는 없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어떤 社會主義國은 自國의 必要에 副應한 적합한 發明者證制度를 갖고 있으나 어떤 社會主義國은 發明者證制度를 갖고 있지 않다.

各國의 事情에 따라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IV. 發明特許만 인가?

實用新案·意匠도 포함하는가?

中共特許法에는 3種의 特許, 即 發明特許·實用新案特許 및 意匠特許가 있다.

實用新案保護에 관해서는 國内外에서 異論이 있다. 中共에서는 어떤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實用新案은 内容에 관해서는 審查를 하지 않기 때문에 外國 특히 日本으로부터 出願되는 大量의 實用新案을 處理하는 것은 困難할 것이다. 國際知的所有權 分野의 外國人們은 實用新案特許에 관해서 별도의 意見을 갖고 있다. 그들은 實用新案의 學問的 定義는 없으며 또 實用新案과 發明特許와의 區別方法이 아주 명백하지 않다고 말한다. 技術的 考案과 같은 小發明을 推進하는 것은 別途의 手段을 採用해도 좋다.

公布直前까지 계속된 오랜 討議를 거쳐 中共特許法에는 實用新案의 保護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고려한 結果이다. 첫째, 中共은 開發途上의 社會主義國이다. 廣範圍한 集團 및 中小企業으로부터의 多數의 小發明은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은 낮으나 中共에서 經濟効果의 水準向上과 技術改革에 큰 役割을 할 수 있다. 둘째, 他國 특히 · 사독 · 일본의 經驗에서 實用新案은 그 國家의 經濟發展에 贊成하는 貢獻을 했음이 나타나고 있다. 세째, 發明特許와 實用新案과를 가능한 한 區別하도록 노력했다.

第2條에는 “創造性이라 함은 發明일以前에 存在한 技術과 比較하여 發明에 있어서는 우수한 實質的 特徵과 顯著한 進步가 보이고, 實用新案에서는 實質的 特徵과 進步가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우수한”과 “현저한”이라 함은 앞으로 實제경험에 根據해서 새로이 정의되고 說明되어야 한다.

意匠에 관해서 그 法의 保護에 대해서는 意見의 相異는 없다. 그러나 特許法公布直前까지 特許法의 主된 役割은 發明을 保護하고 奬勵하는 것임을 主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意匠을 國家經濟 및 國民의 生活水準에 대해서 重要하나 發明은 아니며 他法律 또는 規定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結局 意匠의 保護는 必要하고 또 國際的 實務에 의하면 (파리條約第5條의 5) 外國意匠은 保護되어야 한다. 그래서 意匠에 대한 他特別法 또는 規定을 제정한다고 하면 數年間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많은 特徵이 있다. 發明特許에 대해서는 早期公開와 審查延期

制度가採用되었다. “特許局은發明特許出願을受理한後,豫備審查에 의해 이法律의要件에適合하다고認定된 경우는出願日로부터 1년 6個日以內에公表한다.特許局은出願인의請求에의거出願을早期公開할수있다”[第34條],發明特許出願은出願日로부터 3年以内에特許局이出願인의請求에의거해서그出願에대한實體審查를할수있다.……特許局은必要하다고인정한경우는직권으로發明特許出願에대해서實體審查를할수있다.”[第35條]

한편 實用新案 또는 意匠特許出願에 관해서는發明特許보다 그 特許要件이 낮기 때문에 異議申請을 수반하는形式審查를採用한다. 즉, “特許局은 實用新案과意匠의 特許出願을接受한後豫備審查에 이法律의要件에適合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實質審查를 하지 않고 단지公告만하고出願人에게通知한다”[第40條],“(發明·實用新案 또는 意匠의) 特許出願公告日로부터 3個月以内에는 누구라도 이法律이定하는 바에 따라特許局에 異議申請을 할수있다.”[第41條]. 만약公告日로부터 3個月以内에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申請이不適法한 때에는特許局은出願人에대해서特許權을賦與한다.

“發明特許權의存續期間은 15年으로하고出願日로부터起算한다. 實用新案과意匠의 特許權存續期間은 5年으로하고出願日로부터起算한다.(實用新案 및 意匠의) 特許權者는期間終了前에 3年間의延長을申請할수있다.”[第45條].

V. 特許에 의해 보호되는 技術的範圍

中共特許法第25條에 의해 다음에掲記하는 것에 대해서는特許權을부여하지 않는다.

- 1.科學上의發見
- 2.知能的活動의規則과方法
- 3.疾病의該斷·治療方法
- 4.食品·飲料·調味料
- 5.藥品 및化學的方法으로얻어지는物質
- 6.動物과植物의品種
- 7.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해얻어지는物質

前項의 第4號부터 第6號까지 열거한製品의生產方法에 대해서는이法律이定하는 바에 따라特許權을부여할수있다.

이條에관해서도外國으로부터異見이있었다.外國의 어떤 者는特許保護의制限에 대해서는理論의으로는 아무런合理的인根據가없다고說明했다. 또 어

떤者(특히日本 및美國)은特許保護에서化學物質을除外하는것에 대해서異見을달리했다.

日本 사람들은日本의特許史에서化學物質을除外한것은日本의化學工業發展에有害한結果를초래했다고알려왔다.

第25條는大多數開發途上國과一部既開發國의歷史의經驗의結果이다. 藥品·Food·化學의方法으로얻어진物質내지動物과植物의新品種과같은위에열거한物質은國民의健康및加工工業과密接한關聯이있다. 이들이미치는영향은상당히廣範圍하기때문에더욱調查研究가必要하다.但,新規한化學式을가진物質을포함하여이들의新規한生產method은中共特許法이정하는바에따라保護된다.

一般的으로 인정된國際實務에따라科學上의發見,知能的活動의規則과方法 및 疾病의診斷,治療method은技術的發明에속하지않는다.

이들은工業및農業生產에는直接利用할수없고特許保護範圍에는포함되지않는다.

VI. 發明 및 考案의 保護, 普及 및 出願

第11條에는“發明特許權 또는 實用新案特許權이부여된後는本法14條에定하는경우를제외하고어떠한組織또는個人도特許權者的許諾을얻지않고그特許를實施하는것,즉生產·營業의目的으로그特許製품을製造·使用이나販賣혹은特許method의使用을할수없다”고規定되어있다.

外國人에대한効果적인保護도보장되어있다.第3者의特許된發明 및 考案은 實務許諾契約 또는強制許諾에의해서만實施할수있다.

實施許諾契約에관해서는第12條에“어떠한組織또는個人도個人의特許를implement할경우는本法第14條에定하는경우를제외하고特許權者와書面에의한實施許諾契約을締結하고特許權者에게特許使用료를支拂해야한다.被許諾者は契約에정하는以外의어떠한organization또는個人에게도當該特許의implementation을認定할權利를갖고있지않다”고規定되어있다.

最後의條文은常務委員會에의해附加되었다. 1企業이輸入하여100個企業이实施하는것을禁止하고있음이強調되었다.

強制許諾에관해서는实施에대한本來의in義務가있다.第51條에는特許權者는스스로中共에서그特許製품을製造하고그特許method을使用하든가他人이中共에서그特許製품을製造하고그特許method을使用

하도록 許諾할義務를 부담한다”고 规定되어 있다.

파리條約改正 外交會議에서 B그룹의 代表者は 特許實施義務가 많은 開發途上國(特히 中小國家)에서 特許權者를 經濟的破産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력하게 主張했다. 그러나 中共은 市場이 상당히 크고 또 特許權者는 그義務를 實施契約을 통해서 實施할 수 있다.

“發明 및 實用新案의 特許權者가 特許權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滿3年間 本法 第51條에 定하는義務를 當당한理由 없이 履行하지 않는 경우는 特許局은 實施條件을 구비한 組織의 申請에 의거 當該特許實施 強制許諾을 부여할 수 있다”[第52條].

第56條에는 “實施의 強制許諾을 取得한 組織 또는個人은 專用 實施權을 갖지 않으며 또 他人에게 實施를 인정한 權利도 갖지 않는다”고 规定되어 있다.

이들 2個條는 파리條約과 中共의 事情에도 合致하고 있다. 同時に 中共은 파리條約改正 外交會議에서 77그룹으로부터의 提案에도 유의해야 한다. 中共 國內에서는 全國民所有制 또는 集團所有制下에 있는 中共特許權者 및 中共人個人은 第14條에 規定된義務를 진다. 第14條는 아주 重要한 條文이다. 이 條는 計劃許諾이라 부르고 있으나 外資企業·外國個人 및 中共과 外國合資企業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VII. 外國人の 特許出願

1) 內國民의 處理原則

外國人에 대한 法的保護에 관한 가장 重要的條文중의 하나는 第18條로 “中共에 통상적인 居所 또는 營業所를 갖지 않은 外國人, 外國企業, 其他 外國機構가 中共에서 特許를 出願하는 경우는 그 所屬 國家가 中共과 締結한 條約 또는 다 같이 加入되어 있는 國際條約에 따라 혹은 互惠主義原則에 따라 이 法律에 根據해서 處理한다”고 规定되어 있다.

이 條文의 意味는 中共에서는 아주明白하다. 外國으로부터의 出願이 만약 있다면 그 出願인이 속하는 국가와 中共間에 締結된 雙務協定 혹은 兩國이 다같이 加盟되어 있는 國際條約에 따라 處理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條約이나 協定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互惠主義原則에 따라 處理한다.

유럽제국에서는 “互惠主義”에 대해 어떤 理解와 解釋이 되어 있다.

A. Bogsch博士는 “互惠主義는 물론 同一待遇原則은 하나의例外이다.”

互惠主義란 例를 들어 그 自國民에 대해서 20年의 存續期間의 特許保護를 부여하는 A國은 만약 B國이 7년의 存續期間을 規定하는 特許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B國의 國民에 대해서 7년의 存續期間의 保護밖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고 피력하고 있다. 誤解를 피하기 위해 中共特許法은 出願은 “…이 法律에 따라 處理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他國이 自國 國民과 마찬가지로 中共 國民에 대해서同一의 特許保護를 保證하려면, 例를 들어 存續期間이 7年밖에 되지 않더라도 中共은 自國 國民에게 부여하는 것과同一의 例를 들어 發明特許의 경우 15年間의 特許保護를 그 外國國民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優先權

“外國의 出願인이 外國에서 最初로 發明 또는 實用新案의 特許出願을 한 날로부터 1年以内에 또는 外國에서 最初로 意匠特許出願을 한 날로부터 6個月 以內에 中共에서同一의 出願을 한 경우는 그 所屬 國家와 中共이 締結한 條約 또는 다같이 加入하고 있는 國際條約에 따라 혹은 相互優先權을 承認하는 原則에 따라優先權을享有하고 外國에서 처음으로 出願한 날을 出願日로 할 수 있다”[第29條].

이 條文은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條約第9條C와 完全히 一致한다. 中共 特許法이 처음으로 施行되는 時點인 1985年 4月 1日 以前에는 中共에서는 特許出願의 提出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中共 國民은 外國에서 優先權을享有할 수는 없다.

3) 國內代理機關

“中共에 통상적인 居所 또는 營業所를 갖지 않은 外國人, 外國企業, 其他 外國機構가 中共에서 特許를 出願하고 其他 特許節次를 請는 경우는 中共 國務院指定의 特許代理機關에 委任해야 한다”[第19條].

이 條文은 파리條約第2條와 一致하고 있다. 中共 國務院은 中共 國際貿易促進委員會(CCPIT)를 中共에서의 外國特許代理機關으로 指定했다.

外國人은 또 세로이 設立된 中共特許代理(香港)有限公司 및 上海特許事務所와 접촉해도 좋다.

中共은 파리協約에 加入하여 1985年 3月 19日 條約의 効力이 發生하였다.

〈8〉